

2024년 2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희망기업 모집 공고(8월 지정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분야 우수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에 대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보보호 분야 제품인증을 취득한 창업, 벤처기업 대상 공공판로 지원을 통한 우수 정보보호 초기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
-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시 가점 2점 부여

2. 추천대상 및 지원내용

- (추천대상)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등 분야 정보 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추천 대상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IoT 보안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 단, 인증 유효기간이 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터 6개월 이상 남아야함

- (신청자격)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제외대상) 조달청 고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및 추천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제 6조)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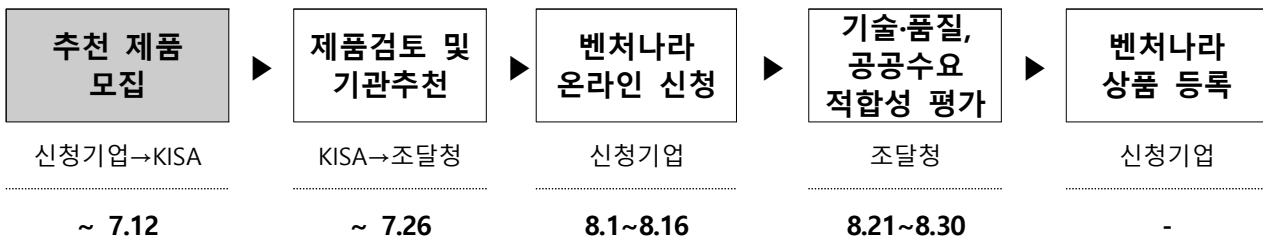
«[참고] 2024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
-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 ③ 청년기업(만 39세, 대표 또는 대표이사 기준) 우대사항 - 지정심사시 가점 1점 부여

○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 등록상품 지정 심사평가(8월)시 가점 2점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및 지정 절차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7월 12일(금) 18:00 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접 수 처) yschoi@kisa.or.kr
- (문 의 처) 인증제도 및 추천 관련 문의

- 사업 안내 및 IoT 보안인증 : 02-405-6325
- 물리보안 성능 시험인증 : 02-405-5187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02-405-6478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 02-405-5682

※ 벤처나라 제도 문의는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로 문의(042-724-7506, 7193, 6259)

4. 신청 서류

구분	서 류 명	비고
1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서식1]	필수
2	○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신청서 [서식2]	필수
3	○ 사업자등록증	필수
4	○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해당시
5	○ 창업기업 확인서 -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해당시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3]	필수

※ 관련 서식은 조달청 고시 제2023-43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별지의 서식을 수정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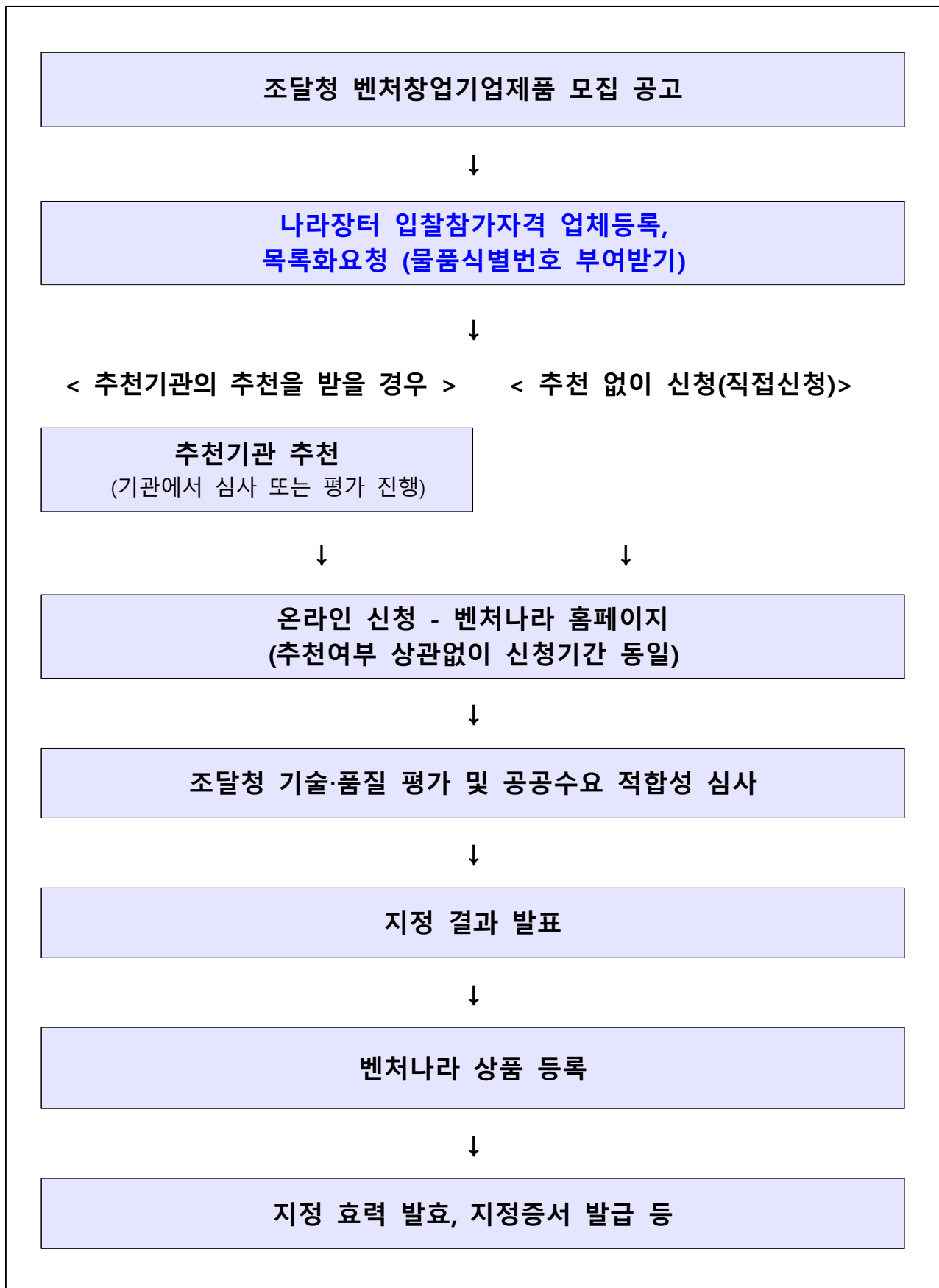
5.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시 이점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최종 추천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추천기업은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 추천으로 선택하고, 직접신청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해야함
- 기관 추천 가점의 경우, 2024년 8월 지정심사에 적용되므로 반드시 추천 회차 확인 후 온라인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함
- 추천 신청 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목록화요청을 통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만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번호 미부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절차 흐름도 >



[서식1]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하여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을 위한 기관추천 신청 제출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정보보호 인증(IoT 보안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을 받은 동일한 제품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약합니다.
3.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 이후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벤처창업기업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거래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벤처창업기업 제품
추천 관련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

대 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신청서

업체명	국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영문			
대표자명				
주소	(우)			
홈페이지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명		부서 및 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휴대폰번호	
기업구분 (해당란에 ✓표)	☐ 벤처기업 ☐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업종분야 (해당란에 ✓표)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기계장치 ☐ 건설·환경 ☐ 기타()			
인증분야 (해당란에 ✓표)	☐ IoT 보안인증 ☐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인증번호				
상품명				
상품분류 (해당란에 ✓표)	☐ 디지털/가전 ☐ 컴퓨터/주변기기 ☐ 자동차/공구/기계 ☐ 전문장비 ☐ 건강/의료 ☐ 교육용품 ☐ 시스템/소프트웨어 ☐ 기타 아이디어상품			
상품설명	※ 상품 개요 및 용도, 목적, 우수성 등에 대한 설명(2~3줄)			
기타 (해당란에 ✓표)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 신청 상품 관련 품명 제조 등록) ☐ 신청 상품 물품목록번호 등록 (물품목록번호) ※ 반드시 신청상품과 관련된 제조 등록 여부 및 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체크			
2024년도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				
주) 1.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2. 업체명(국문 및 영문)은 향후 지정서 제작 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추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수집된 정보는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안내

- 수집·이용 목적
 - 벤처창업기업제품(벤처나라) 지정 추천 업무 수행
- 수집·이용 항목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부서, 직위
-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추천선정 대상의 경우 벤처나라 등록 종료 시 까지
 - 미 추천 대상의 경우 추천 대상 선정완료 후 즉시 파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 받는 자
 - 조달청
- 제공 목적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심사 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제품) 여부 확인
- 제공 방법
 - 공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 공유
- 제공 항목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부서, 직위
-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벤처창업기업 제품 추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중

참고1

벤처나라 소개

□ 벤처나라 개요 (venture.g2b.go.kr)

- (판로 지원)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온라인 전용쇼핑몰 '벤처나라' 운영('16.10~, 조달사업법 제25조)

□ 벤처나라 운영현황

- (신청자격) 벤처 또는 창업기업으로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
- (지정심사) 기술·품질평가 총합 70점 이상*, 조달적합여부 등 심사
 - *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없어도 기술과 품질만을 심사하여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
- (벤처나라 등록) 바로주문, 견적주문 등을 거쳐 공공기관에 납품

□ 2024년 벤처나라 상품 지정 신청 일정

지정 회차	2024년
온라인 신청기간*	하단 일정표 확인 (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경우 동일)
지정심사	하단 일정표 확인
지정 결과 발표	2,4,5,6,7,8,9,10,11,12월말 지정심사 종료일에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시 (발표일자는 예정이며 심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천기관 추천은 추천기관의 자체 일정을 확인
- 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전 추천기관에 추천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

	8월 지정심사			9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07.01~ 07.26			08.01~ 08.27		
온라인신청		08.01~ 08.16			09.02~ 09.13	
지정심사			08.21~ 08.30			09.23~ 09.30

	10월 지정심사			11월 지정심사			12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09.01~ 09.25			10.01~ 10.25			11.01~ 11.26		
온라인신청		10.01~ 10.18			11.01~ 11.15			12.02~ 12.18	
지정심사			10.23~ 10.31			11.20~ 11.29			12.23~ 12.31

※ 온라인신청은 신청 종료일 18시에 마감

참고2 정보보호 분야 인증 설명자료

① IoT 보안인증

- (개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IoT) 제품, 앱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요구조건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 지원(임의)
- ※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 ※ (인증대상) 가전·교통·금융·스마트도시·의료·제조 및 생산·주택·통신 등 8대 분야
-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인증기관) ↔ TTA, KTC(시험기관)

②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 지능형 CCTV 인증 제도

- (개요) 국내 지능형 CCTV 기술력 제고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인증용 영상데이터를 구축제공하고 성능 우수 제품에 인증서 발급 지원(임의)
- ※ (인증대상) 일반분야 10종(침입, 배회 등), 안전분야 6종(치매노인수색 등)
-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시험·인증기관)

②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 바이오인식 및 위조방어력 시스템 성능인증 제도

- (개요) 국내 생체인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체인식 제품에 대한 알고리즘 성능 및 위조 방어력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임의)
- ※ (인증대상) 생체인식 4종(지문, 얼굴, 홍채, 정맥), 위조방어력 1종(위조지문)
-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시험·인증기관)

③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

- (개요)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의 처리성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하는 제도(임의)
- ※ (법적근거) 정보보호산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 (인증대상) DDoS 대응장비, 안티바이러스 등 총 15종 대상('23년 기준)
-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확인기관) ↔ TTA, KSEL 등 5개(평가기관)

④ 정보보호제품 신속 확인제

- (개요) 기존 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에 대해 보안 및 기능 적절성을 심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임의)
- ※ (법적근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61호)
- ※ (인증대상) 기존 정보보호제품(20여종) 이외에 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 ※ (인증체계) 과기정통부(정책총괄) ↔ KISA(확인기관) ↔ 보안점검·기능시험 기관